주민세 납부를 잊지 마세요!



총무성, 법무성, 삿포로시 홈페이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주민세란?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 이더라도 살고 있는 행정지역(시구정촌)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월 2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주민세의 납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의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주민세 납부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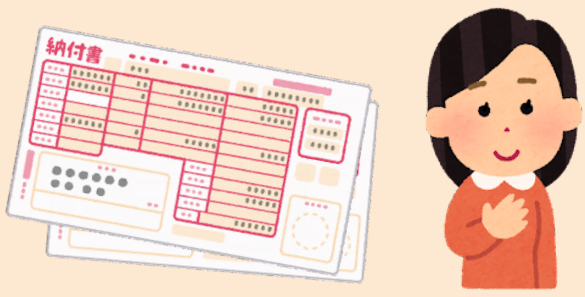


「특별 징수」 - 급여에서 공제

회사 등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고 시구정촌 행정기관에 납부합니다.
회사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특별징수'가 원칙이며, 개인이 직접 시구정촌 행정기관에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징수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❷



「보통 징수」 - 개인이 직접 납부

행정기관(시구정촌)에서 6월경에 발송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납부합니다.

자동으로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은 4회 (4분기)에 걸쳐 납부합니다.
4회로 나누어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살고계신 시정촌의 세무 담당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계좌이체 신청에 관해서는, 살고 계신 시정촌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재류 기간 갱신 신청 등의 출입국관리 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세 납부 상황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미・체납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영주허가신청」은 특히 심사가 엄격합니다.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

특별 징수로 주민세를 납부하던 사람이 회사 등을 그만두게 될 경우, 납부되지 않은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의 ❶～❸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납부 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❶ 보통 징수로 납부
❷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 전액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시구정촌에 납부
❸ 새로운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특별 징수





귀국하는 경우 주민세에 대하여

퇴직 후의 주민세의 납부방법, 귀국후에도 주민세의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해 해설하고 있는 다국어 리플렛 입니다.

www.hiecc.or.jp/soudan/info/detail.html?pid=1064208297700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사이트「세금」

다국어로 「세금」의 기본 규칙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출입국 재류관리청 웹 사이트입니다.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